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출자료 위·변조 행위 등에 대한 벌칙 신설〉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92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감사를 방해한 자,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자료를 인멸·은닉 또는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재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사방해죄(제51조제1항제2호)¹⁾ 중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정보·자료의 인멸·은닉·위조·변조행위 및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하는 행위를 별도의 벌칙으로 규율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임(안 제51조제3항).²⁾³⁾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①·② (생략) <신설>	제5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u>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 요구된 정보나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 또는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u> 2. <u>제50조에 따라 제출 요구된 정보나 자료를 인멸, 은닉, 위</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u>조, 변조한 자 또는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감사방해죄는 어떠한 형태이든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강제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의 감사에 간접적으로나마 강제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 한편, 해당 범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은 해당 벌칙 규정이 신설된

1) 「**감사원법**」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2)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감사자료 인멸·은닉·위조·변조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광주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299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2636 판결로 확정)은 감사원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사원법위반(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방해죄)로 보았음.

3) **광주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299 판결** “피고인은 2016. 10. 28.경 Y으로부터 ‘감사원 담당자가 C지사 최소부하 적용 기술검토 현황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Y에게 ‘감사원 담당자에게 제출할 C지사 최소부하 적용 기술검토 현황자료에서 위 E태양광발전소 등 8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Y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지사 최소부하 적용 기술 검토 현황 자료’에서 위 E태양광발전소 등 8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후 이를 감사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2016. 11. 2.경과 2017. 5. 15.경에도 같은 자료를 감사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Y으로부터 ‘감사원 담당자가 전력수급계약 신청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Y에게 위 2.나.항의 Q 명의 N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 ‘AR’을 ‘AS’으로 수정한 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Y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화번호를 임의로 수정 한후 이를 감사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생략)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하였다.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감사원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4) 위 하급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299 판결)은 감사원법위반죄(감사방해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는 달리 행위태양을 ‘위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반드시 감사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행위자의 고의적인 어떠한 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1973년⁵⁾ 이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벌금의 경우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2차례 개정⁶⁾되어 현재 1천만원 이하로 규정됨.

□ 감사방해죄 중 감사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의 인멸 또는 위·변조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여 강화된 법정형을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유사 입법례⁷⁾ 및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형벌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자료 등 제출 요구⁸⁾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안 제51조제3항제

5) 「감사원법」(법률 제2446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법에 의한 감사를 방해한 자

6) 10만원 이하(법률 제2446호, 1972. 1. 25, 일부개정)→500만원 이하(법률 제4937호, 1995. 1. 5. 일부개정)→1천만원 이하(법률 제12222호, 2014. 1. 7. 일부개정)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8)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호 중 “문서 등의 봉인⁹⁾(제2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51조제3항제1호는 문서 등의 제출요구(제27조제1항제2호)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제27조제2항)에 대한 위·변조행위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후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자료¹⁰⁾라는 점을 심사시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기본 취지에 공감하나,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현행 감사방해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제51조제1항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9) **감사원**, “감사원법 바로 알기”, 2018. p.133에 따르면 봉인이란 특정 시점에 물품이나 금품 등의 인멸, 은닉, 위·변조 등의 형상변경을 방지하고 시제(時在-당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을 의미)를 확인(상태 보전)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임.

-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이하 생략)

문 의 처
02)6788-5055